

『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제안이유

우리구 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혁신 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자 함

제안내용

- 부구청장 밑에 혁신기획단을 둠
- 존속기한 : 2007. 6. 30

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(행정기구),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에 근거하여 한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을 부구청장 직속하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법적근거인 대통령령 18701호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한시 기구는 “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존속기한을 3년 이내로 하며,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” 하는 조건으로 조례로 정하여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-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혁신관련 지방자치단체 정원보강지침 (2005.10.19)에는 시·군·구의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팀을 행정혁신팀과 균형발전팀, 고객만족행정팀으로 확대하여 구성·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
- 우리구의 경우 혁신업무와 관련된 행정조직은 혁신분권팀이 기획예산과내에 2004.7.20 설치·운영되어 오다가 2005.9.20임시조직인 혁신기획단의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05.10.5 인사발령 후 구본청 본관6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혁신기획팀, 혁신지원팀, 연구개발팀 11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
- 우리구에서 2004.7.20 혁신분권팀 구성 이래 추진된 주요혁신업무 추진실적은 혁신동아리 운영, 제5회 자치행정혁신전국대회 우수기관수상, 혁신사이버아카데미운영, e업무혁신방운영, 팀업무혁신추진,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선정(행자부)등입니다. 특히, 2005.9.5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받아 타 자치단체보다 탁월한 행정혁신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혁신조직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.
- 지방행정 혁신선도 자치단체로 선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혁신기관 설치현황과 관련법규 등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2. 5

보고자 : 김 찬 재

- 붙임 : · 혁신선도기초자치단체혁신기관설치현황
· 관련법규
· 시·군·구지방행정혁신관련업무분장안(행자부)
· 영등포구혁신분권기구설치현황

혁신선도 기초자치단체 혁신기관 설치현황

2005.11.16.현재

자치단체명	혁신기구명	혁신기구성격	설치일	정원/현원	비고
강남구	혁신분권팀 (총무과)	정규기구	2004.5.1	3/3	2104-1074
부산서구	혁신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4.7.1	3/3	(051) 240-4041
대구동구	혁신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4.6.1	3/3	(053)955-2211 과설치추진중
인천남구	참여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4.7.7	3/3	(032)880-4582
광주북구	혁신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4.7.1	3/3	(062)510-1216
대전대덕구	구정기획단 (사무관1, 주사3)	여유기구	2005.7.1	8/9	(042)620-6267
수원시	혁신분권팀 (총무과)	정규기구	2004.8.30	3/3	(031)228-2385
부천시	혁신분권팀 (정책기획과)	정규기구	2004.11.5	3/3	(030)320-2056
김포시	혁신분권담당관 (사무관1, 주사3)	여유기구	2005.8.8	11/11	(031)980-2155
제천시	혁신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4.7.9	5/5	(043)640-5061 (1개팀 신설예정)
서산시	혁신분권팀 (총무과)	정규기구	2004.10.1	2/2	(041)660-3306 (1명 증원예정)
남원시	혁신분권팀 (기획감사실)	정규기구	2005.3.19	4/4	(063)620-6936
구미시	혁신정책담당관 (사무관1, 주사4)	여유기구	2005.6.10	15/15	(054)450-6031
양산시	혁신분권팀 (총무과)	정규기구	2004.7.19	3/5	(055)380-5221 (2명 증원예정)
영동포구	혁신기획담당관	한시기구	의안상정	11	

관 련 법 규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일부개정 2003.12.30 대통령령 18191호)

- 제6조(한시기구의설치운영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2.4, 1998.8.31>
-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⑥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·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사·군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사·도지사" 라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1997.2.4., 1998.8.31, 1999.9.9>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일부개정 2004.12.18 대통령령 18603호)

- 제6조(한시기구의설치운영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2.4, 1998.8.31>
-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⑥삭제 <2004.12.18>
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(일부개정 2005.2.11 대통령령 18701호)

- 제6조(한시기구의설치운영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 <개정 1997.2.4, 1998.8.31>
- ②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③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④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⑤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 <신설2001.12.19>
- ⑥삭제 <2004.12.18>

시·군·구 지방행정혁신관련 업무분장안

[행정자치부]

① 행정혁신담당(팀) - 분리신설, 명칭변경

- 자체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혁신과제 발굴·추진 총괄
- 행정혁신 관련 자체교육 및 학습프로그램 개발·운영 총괄
- 지방분권특별법상 자치단체 수행사항 이행 및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 및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
-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등

② 균형발전담당(팀) - 분리신설, 명칭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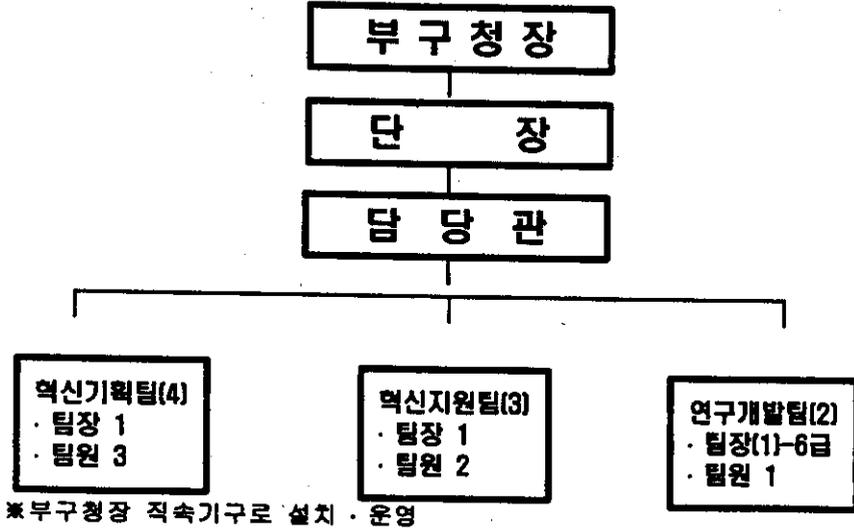
- 지역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,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지원
- 신활력지원사업, 지역전략산업의 육성,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 공공기관유치 및 혁신도시 관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 관련 업무 총괄
-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전반 협조 등

③ 고객만족행정담당(팀) - 자체보강

- 고객관리 대상 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
- 주민전절도조사등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·시행 등

영등포구 혁신분권기구 설치현황

□ 조직도



□ 사무분장

팀 명	주요 기능	인 원
혁신기획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추진전략 수립, 혁신활동 기획관리 ·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· 우수사례경진대회 등 평가관련 업무 · 매뉴얼 작성 및 프로세스 재설계 · 기타 타에 속하지 않은 혁신관련업무 	4
혁신지원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혁신교육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 · 학습조직 및 동아리 등 혁신추진조직 관리 · 민원행정·제도개선 관련 업무 · 벤치마킹에 관한업무 · 지식관리시스템 및 업무혁신방 운영 · 공기업,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혁신지원 	3
연구개발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구청 주요시책사업 및 신규 프로젝트사업 추진 · 지방분권, 지방이양 관련 업무 ·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관한 업무 · 각종 구정발전 과제 연구 등 	2